



지방자치 정책 Brief

2022. 7.
NO.149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협력 방식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유수동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제도의 도입

-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2년 4월 18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 단체로 설치되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사·조직권과 조례·규칙제정권이 부여되고, 별도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 기존의 협력제도들에 비해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대효과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방식이자,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갈등 조정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추진방향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으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 주민 의견과 행정수요를 기반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운영 방향을 정립하여야 함
 - 특별한 행정수요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기능과 사무를 발굴해야 하며,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규모와 소요 재원 마련 등 그 추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 물론,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요건인 것은 분명함

01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 방식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

- 지방자치는 특정 행정구역 중심으로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역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거나 특정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행정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
 - 또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인 협력과 갈등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오늘날 교통·정보통신의 발달, 생활권 및 경제권 확대 등 지방행정 환경변화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초월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한계

-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경험 부족,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거래비용 증가, 복잡한 이해관계, 지역사회 내 공감대 부족, 제도적 기반 미흡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금창호, 2018b, 최용환, 2019)
- 특히,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을 활용하여 광역행정에 대응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해 자치권과 실효성에 많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 분쟁해결능력과 실무적 집행력의 부족, 법적 성격의 불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 등 제도 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음(금창호, 2018a)
-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0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과 기대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 단체를 설치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99조 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됨
-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협력제도들에 비해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임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비교 ■

구 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적성격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	공법인
구성기관	공동 설치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
집행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겸직 가능)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선임
임용권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임용권 有	조합장 임용권 無
직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지방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
사무위임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 가능	-

자료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1.10.14.)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성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협력제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그동안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한계가 드러났으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음
 - 특히,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효과적인 대응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 분야 ■

구 분	주요 내용
초광역협력형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에 따른 비효율성 극복, 광역경제·생활권 형성, 해당 권역 전체의 경쟁력 제고 및 시·도민 편의 향상
인구감소지역 서비스 공공 제공	인구감소 대응,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생활 필수서비스 제공
특정 사무·기능의 효율적 수행	특정 기능 목적으로 지역 간 통합적인 사무 수행, 중복 또는 유 휴자원의 비효율성 제거, 자원의 집중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등 시너지 효과 창출
갈등조정형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현상 해소, 단일생활권으로 관리 하여 주민 불편 문제 해소

03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방자치단체 간 새로운 협력방식

-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권역별 초광역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추진되어 왔음
- 2022년 4월 18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면서 초광역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광역단위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초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한계 보완과 권역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방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주민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추진 필요

- 무엇보다도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함
 - 지역특성에 기반한 특별한 행정수요를 발굴해야 하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적합한 기능과 사무, 재원배분을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관장사무 발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위임 검토,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 규모, 소요 재원 마련방안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특히,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주민 간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상시적으로 조정·합의해 나가야 하며, 그 추진도 전략적·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방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해와 혁신적인 마인드가 요구됨
- 이러한 점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기존의 협력제도보다 역동적이며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끊임없는 소통과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음
- 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21.10.14.)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금창호(2018a) 「광역연합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금창호(2018b)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최용환(2019) 「지방자치단체 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충북연구원 기본과제보고서.

내용문의

유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부연구위원(033-769-9846, soodongyoo@krila.re.kr)

지난호 보기

